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 정책사업명	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		
② 추진배경	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지원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		
③ 주요내용	■ “임대보증금”을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로 정의하여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하고자 함(안 제2조제7호 신설) ■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무주택가구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정하고자 함(안 제3조제2항 신설) ■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대상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하고자 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 ■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대출계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의 이자 범위로 정하고자 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		
④ 사업부서	주택건축과	⑤ 담당자	조용운
⑥ 선정기준	조례 제·개정사항	⑦ 사업기간	2025
〈그간 주요 추진내용〉			
○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○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○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		‘25.02.05. ‘25.02.26. ‘25.03.07.	김형우 건설교통국장 김용수 주택건축과장 하에은 주거복지팀장 장도광 주무관